

의안 번호	2566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	---

1. 검토경과

- 제출 일자 : 2026. 3. 24.(화)
- 제출 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3. 24.(화)
- 위원회 심사일자 : 2026. 4. 2.(목)

2.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의 보장 내용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금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권리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보험의 정의에 대한 용어 정비(안 제2조제3호)
- 나. 보험의 보장내용 확대를 위한 조문 수정(안 제6조제1항)
 - (기존 보장내용)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 (보장내용 확대) 기존 보장내용에 발달장애인 상해 보장 등 일부 보장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을 규정
- 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7조제2항)
 -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
- 라. 보험금 지급대상 제외 관련 일부 용어 정비(안 제8조)

4.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4조, 제9조, 제30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의 보장내용에 대한 확대 근거를 마련 하고 보험금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 정비, 조문 수정, 보험지급에 대한 조항 신설, 지급대상 제외 관련 용어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반 사항을 검토한바, 보험제도의 운영에 있어 제도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